

---

# 1381 해외인증자료

---



작성일자 2025.01.09.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 (문의)

안녕하세요. 침대매트리스 및 침대프레임 신규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미주 수출 시 필요한 필수 인증 항목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규제 개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그 외 귀사제품에 필요한 인증 개요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국 규제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조사자료에서 확인 바랍니다.

#### ▶ 미국시장에 침대를 판매하기 위해서 필수 인증이 있을까요?

귀사의 제품을 일반 소비자용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소비자제품안전 규제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판매/유통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매트리스에 적용되는 CPSC의 안전규제는 가연성섬유규제(flammable Fabrics Act (FFA))가 있습니다. 해당 가연성 규격에 따라 시험하시고 GCC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트리스에 사용되는 토퍼와 침구류는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섬유라벨링 규제에 따라 섬유조성, 케어라벨링, 업체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매트리스 및 침구류(섬유)에 대한 상세사항은 아래 조사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미국 인증제도의 특성 및 유의사항

미국은 국가강제인증이 아닌 민간임의인증이 미국 시장과 업계에서 통용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어의 요구사항과 동종업계의 인증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양/용도에 따른 정확한 제품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도 상이합니다.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자료는 귀사 제품의 자세한 사양 없이 추론한 정보로 귀사제품에 맞춤형 정보가 아닌 미국 매트리스 제품 인증에 대한 일반정보이므로 귀사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인증/규격 파악을 위한 기본정보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해당여부 및 적용규격/시험항목 등의 상세사항은 해당 인증기관에 귀사제품사양을 첨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콜센터에서 조사해드리는 내용은 귀사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나 인증의 개요, 절차, 유의사항 등의 일반적인 정보로 제품 스펙, 설계상의 법적 조언이나 권고를 드리는 것은 1381콜센터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이는 해당 인증기관 실무자와 귀사 제품의 자세한 스펙을 바탕으로 협의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안내해드린 인증기관에 귀사제품 사양서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에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규제(강제)를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 주별 규제와 민간 사기업 규정(e.g. 아마존 내부규정)을 모두 안내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가차원의 규제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주별 규제는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의 업무 대응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CPSC 소비자제품 안전규제 개요

### ▶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www.cpsc.gov](http://www.cpsc.gov)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인증을 발행하는 인증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사후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안전규격을 지키지 않은 불량제품에 대한 규제와 리콜을 담당합니다. 제품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은 다양하며 중첩될 수 있습니다. CPSC는 이러한 법을 근거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 자체 시험을 통한 규정만족 및 사후관리 심사

사전 인증제도는 CPSC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가 소비자 제품의 판매전에 반드시 강제 규제되는 요건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CPSC는 시장 감시 및 부적합 신고제도 등 시장 감시를 통해 이의 이행을 검사합니다.

#### 예) 삼성 Galaxy Note7 스마트폰의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사고로 인한 CPSC 리콜명령 사례

- Samsung Recalls Galaxy Note7 Smartphones Due to Serious Fire and Burn Hazards

<https://www.cpsc.gov/Recalls/2016/samsung-recalls-galaxy-note7-smartphones>

- Samsung Expands Recall of Galaxy Note7 Smartphones Based on Additional Incidents with Replacement Phones: Serious Fire and Burn Hazards

<https://www.cpsc.gov/Recalls/2016/samsung-expands-recall-of-galaxy-note7-smartphones-based-on-additional-incidents-with-replacement-phones-serious-fire-and-burn-hazards>

#### #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규제 특성

제품 특성상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섬유제품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품에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여 기본적인 안전(화학적, 물리적 위험)을 보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에 있습니다. 만약 귀사의 제품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일반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는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리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PSC는 시장 감시 및 리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품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입 시에 반드시 제품의 물리적·기계적·화학적·전기적·가연성·위생·방사능 안전성(잠재적 위험성 포함)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사제품의 모든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업체에 책임입니다. 따라서 제품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규격검토와 관련규격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제품의 가연성에 대한 위험으로 실제 부상이나 문제 발생시 CPSC에 리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 제품의 특성상 물리적인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CPSC > Mohawk Recalls Rugs Due To Fire Hazard; Sold Exclusively at The Home Depot  
<https://www.cpsc.gov/Recalls/2014/mohawk-recalls-rugs>

## ▶ CPSC 관할 법안 예시

### # CPSIA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 법: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생산자, 수입업자 또는 도, 소매업자에게 미국 내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사전에 검증한 후 유통시키도록 의무를 부과(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강력한 조치 수반), 이를 검증키 위해 종전 자국 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제3자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해당 시험을 진행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관련 내용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페이지(영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https://www.cpsc.gov/s3fs-public/cpsia.pdf>

- CPSC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The-Consumer-Product-Safety-Improvement-Act>

### # FHSA

그 외에 제품의 성분과 사양에 따라 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품목들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 경우 연방유해물질법(FHSA)에 따라 시험 후 라벨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의 장남감 안전규격과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제사항 및 안전규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시험 및 라벨링을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 CPSC >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 Requiremen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FHSA-Requirements/>

### # Flammable Fabrics Act (FFA) ; CPSC의 섬유규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섬유제품에 대하여 Flammable Fabrics Act (FFA)를 준수할 것을 강제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 CPSC > Flammable Fabrics Act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Flammable-Fabrics-Act>

### # 제품별 CPSC의 규정, 강제규격 및 금지 사항

- CPSC > Regulations, Mandatory Standards and Ban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egulations-Mandatory-Standards-Bans>

▶ Flammable Fabrics Act (FFA)

- CPSC > Regulations, Mandatory Standards and Ban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egulations-Mandatory-Standards-Bans>

(관련 키워드 검색)

일부 섬유제품은 CPSC의 가연성섬유규제(flammable Fabrics Act (FFA))가 적용됩니다.

Flammable Fabrics Act (FFA)의 하위규정인 Flammable Fabrics Act Regulation은 제품별로 가연성 규격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연성 규격에 귀사제품이 해당될 경우 그 규격에 따라 시험 후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라벨링을 해야합니다.

**귀사 제품은 매트리스이므로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MATTRESSES AND MATTRESS PADS (FF 4.72, AMENDED) (PART 1632)/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PEN FLAME) OF MATTRESS SETS (PART 1633) 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귀사의 제품이 CPSC에서 정의하는 Mattress에 해당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의 **압축 롤 팩 매트리스**가 이 매트리스 규격에 적용되는지는 규격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여 업체에서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제품의 용도/사양에 따라 규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으므로 업체가 직접 제품 사양을 근거로 판단하거나 CPSC 측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 관련법

- CPSC > Flammable Fabrics Act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Flammable-Fabrics-Act>

- Flammable Fabrics Act 법안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pdf\\_ffa.pdf](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pdf_ffa.pdf)

# 하위 연방규정

- Flammable Fabrics Act 관련 연방규정

Title 16 CFR SUBCHAPTER D-FLAMMABLE FABRICS ACT REGULATIONS §1610

(parts1602 ~ 1633은 **제품별 가연성 규격**)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4e1b57acf0fd4ac8dc13f4cbcad718f&mc=true&tpl=/ecfrbrowse/Title16/16CIIsubchapD.tpl>

- **Mattresses**의 가연성(Flammability)에 대한 규격 (요구사항, 시험, 라벨링 등)

**16 CFR Part 1632 (1632.1 to 1632.63)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Mattresses and Mattress Pads**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9fd76a06e9aab0d91b7444a5877f33e3&mc=true&tpl=/ecfrbrowse/Title16/16cfr1632\\_main\\_02.tpl](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9fd76a06e9aab0d91b7444a5877f33e3&mc=true&tpl=/ecfrbrowse/Title16/16cfr1632_main_02.tpl)

**16 CFR Part 1633 (1633.1 to 1633.13)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pen Flame) of Mattress sets**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efccc10ef7d05eb4ad5014f66be1f320&mc=true&tpl=/ecfrbrowse/Title16/16cfr1633\\_main\\_02.tpl](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efccc10ef7d05eb4ad5014f66be1f320&mc=true&tpl=/ecfrbrowse/Title16/16cfr1633_main_02.tpl)

# 규제내용

- CPSC의 가연성 규제 Flammable Fabrics Act Regulations

소비자용 완제품인 옷(Apparel)이나 가정용 섬유제품(Household Textiles) 경우 CPSC의 규제 'Flammable Fabrics Act'에 따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CPSC는 Flammable Fabrics Act에 의거하여 섬유제품에 대해 재질별로 가연성 시험을 하여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사제품(매트리스)도 해당규제가 적용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Flammable Fabrics Act 관련규정에서 명시하는 가연성 규격 중 “MATTRESS” 관련규격이 적용될 가능성 있음.

- 어린이용 제품 안전 규제

또한 어린이용 제품일 경우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따라 관련규격을 준수하고 업체가 직접 CPC를 발행해야합니다. CPSC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모든 제품에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린이용 제품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어린이 제품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CPC 인증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 CFR Part 1632 (1632.1 to 1632.63)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Mattresses and Mattress Pads (FF 4-72, AMENDED) 규격에 적용되는 제품

§1632.1 Definitions.

In addition to the definitions given in section 2 of the Flammable Fabrics Act as amended (15 U.S.C. 1191),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for the purpose of the standard.

(a) Mattress means a ticking filled with a resilient material used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products intended or promoted for sleeping upon.

(1) This defini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dult mattresses, youth mattresses, crib mattresses including portable crib mattresses, bunk bed mattresses, futons, water beds and air mattresses which contain upholstery material between the ticking and the mattress core, and any detachable mattresses used in any item of upholstered furniture such as convertible sofa bed mattresses, corner group mattresses, day bed mattresses, roll-a-way bed mattresses, high risers, and trundle bed mattresses. See §1632.8 Glossary of terms, for definitions of these items.

(2) This definition excludes sleeping bags, pillows, mattress foundations, liquid and gaseous filled tickings such as water beds and air mattresses which do not contain upholstery material between the ticking and the mattress core, upholstered furniture which does not contain a detachable mattress such as chaise lounges, drop-arm love seats, press-back lounges, push-back sofas, sleep lounges, sofa beds (including jackknife sofa beds), sofa lounges (including glide-outs), studio couches and studio divans (including twin studio divans and studio beds), and juvenile product pads such as car bed pads, carriage pads, basket pads, infant carrier and lounge pads, dressing table pads, stroller pads, crib bumpers, and playpen pads. See §1632.8 Glossary of terms, for definitions of these items.

...

\* 출처 16 CFR Part 1632 > Subpart A > §1632.1 Definitions.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6a60815bc5dd70be872b68b48fecc9bb&mc=true&node=se16.2.1632\\_11&rgn=div8](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6a60815bc5dd70be872b68b48fecc9bb&mc=true&node=se16.2.1632_11&rgn=div8)

# 16 CFR Part 1633 (1633.1 to 1633.13)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pen Flame) of Mattress sets 규격에 적용되는 제품

§1633.2 Definitions.

In addition to the definitions given in section 2 of the Flammable Fabrics Act as amended (15

U.S.C. 1191),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for purposes of this part 1633.

(a) Mattress means a resilient material or combination of materials enclosed by a ticking (used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products) intended or promoted for sleeping upon. This includes mattresses that have undergone renovation as defined i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1) This term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dult mattresses, youth mattresses, crib mattresses (including portable crib mattresses), bunk bed mattresses, futons, flip chairs without a permanent back or arms, sleeper chairs, and water beds or air mattresses if they contain upholstery material between the ticking and the mattress core. Mattresses used in or as part of upholstered furniture are also included; examples are convertible sofa bed mattresses, corner group mattresses, day bed mattresses, roll-away bed mattresses, high risers, and trundle bed mattresses. See §1633.9 Glossary of terms, for definitions of these items.

(2) This term excludes mattress pads, mattress toppers (items with resilient filling, with or without ticking, intended to be used with or on top of a mattress), sleeping bags, pillows, liquid and gaseous filled tickings, such as water beds and air mattresses that contain no upholstery material between the ticking and the mattress core, upholstered furniture which does not contain a mattress, and juvenile product pads such as car bed pads, carriage pads, basket pads, infant carrier and lounge pads, dressing table pads, stroller pads, crib bumpers, and playpen pads. See §1633.9 Glossary of terms, for definitions of these items.

...

\* 출처 16 CFR Part 1633 > Subpart A > §1633.2 Definitions.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2ace6b3a0dde07bb37124580f7fd0cad&mc=true&node=se16.2.1633\\_12&rgn=div8](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2ace6b3a0dde07bb37124580f7fd0cad&mc=true&node=se16.2.1633_12&rgn=div8)

#### # 보증서(guaranty) 발행 (선택사항)

- CPSC > Continuing Guarantie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Flammable-Fabrics-Act/Frequently-Asked-Questions-for-Continuing-Guaranties-under-the-Flammable-Fabrics-Act-and-Filed-with-the-Commission/>

- CPSC > Form and Instructions for Filing a Continuing Guaranty under the Flammable Fabrics Act (FFA에 따른 Continuing Guaranty 제출용 양식 및 안내사항)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pdf\\_flamm.pdf](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pdf_flamm.pdf)

#### # GCC 인증서 (일부 일반제품)

어린이용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 중 GCC 대상인 제품의 (미국)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안전규제에 따라 적절한 시험 후 자기 적합성 선언(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GCC)을 작성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합니다.

- CPSC >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GCC 개요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General-Certificate-of-Conformity/>

- CPSC > Sample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GCC) GCC 작성 예시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General-Certificate-of-Conformity-GCC>

- CPSC > Rules Requiring a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GCC)

: GCC를 작성해야하는 일반제품 리스트(The list of non-children's (general use) products requiring a certificate) (16 CFR Part 1632~1633 Mattresses 해당)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Lab-Accreditation/Rules-Requiring-a-General-Certificate-of-Conformity>

### # CPC 인증서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일 경우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자 및 수입자는 반드시 CPSC 지정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CPC(아동제품인증서;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를 발급해야 합니다. CPC는 CPSC 지정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근거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인증서 상에 제품이 아동용제품 안전규정에 만족함을 명시해야 하며, CPC 및 성적서는 모두 영문이어야 합니다.

- CPSC > Children's Product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childrens-products/>

- CPSC >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

- CPSC >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 : CPC 인증서 예시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CPC/>

- CPSC > Rules Requiring Third-Party Testing and a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제3시험소 시험과 CPC인증서를 요구하는 규정)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Lab-Accreditation/Rules-Requiring-Third-Party-Testing>

### # 트래킹라벨 (Tracking Label) 규제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일 경우만)

- CPSC > Tracking Label Requirement for Children's Produc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racking-label>

- CPSC > Tracking Label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ulemaking/Final-and-Proposed-Rules/Tracking-Labels>

### # CPSC 지정 시험소 검색

CPSC에서 요구하는 인증 및 라벨링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특정 인증이 아니라 관련시험 수행 후 업체가 직접 발행하는 자기적합성선언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기관이 아닌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규격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합니다. 소요기간 및 비용은 시험기관과 귀사 제품사양별로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해당시험기관에 직접 확인 바랍니다. **(제품별 시험가능여부 상이)**

- CPSC > List of CPSC-Accepted Testing Laboratories CPSC 인정 시험기관 목록

<https://www.cpsc.gov/cgi-bin/labsearch> (국가/시험항목별로 검색 가능)

현재 CPSC 웹사이트에 문제가 있어 검색 메뉴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CPSC 지정 시험기관으로는 KCL, KOTITI, SGS, Intertek 등이 있으니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해 주십시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http://www.kcl.re.kr/> 02-2102-2500/ 김영준 연구원 02-2102-2565

- KOTITI 시험연구원 <http://kotiti.re.kr> / 02-3451-7000

- 한국에스지에스(SGS) [www.kr.sgs.com](http://www.kr.sgs.com) / 02-709-4500

- 인터텍 [www.intertek.co.kr](http://www.intertek.co.kr) / 02-774-8201

### # 대표적인 국내 섬유 시험기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섬유제품에 대한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TI 시험연구원 (<http://www.fiti.re.kr/>) / 02-3299-8000

- KATRI 시험연구원 (<http://www.katri.re.kr/>) / 02-3668-3000

※ CPSC가 제공하는 매트리스 가연성 정보는 관련규정(Regulation), 시험매뉴얼(Laboratory Test Manual), 시험기관목록(List of Testing Laboratories), 라벨링, 소비자 정보, 화재안전정보 등의 상세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귀사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PSC > Mattresses, Mattress Pads, & Mattress Se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Mattresses>

#### ※ 문의처

매트리스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CPSC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규제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CPSC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on the requirements for mattresses, contact the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Office of Compliance (for specific enforcement inquiries): e-mail: [sect15@cpsc.gov](mailto:sect15@cpsc.gov); telephone: (800) 638-2772

- Small Business Ombudsman (for general assistance understanding and complying with CPSC regulations):

e-mail: <https://www.cpsc.gov/About-CPSC/Contact-Information/Contact-Specific-Offices-and-Public-Information/Small-Business-Ombudsman/>

telephone: (888) 531-9070.

#### ※ 참고자료

- CPSC > Mattress Flammability Information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Mattresses>

- CPSC > Inflatable Air Mattresses 경고

<https://www.cpsc.gov/Safety-Education/Safety-Guides/cribs-home-kids-and-babies/inflatable-air-mattresses>

- CPSC > Air Mattresses Are Not For Infants

<https://www.cpsc.gov/s3fs-public/5222.pdf>

- CPSC > Overview of U.S. Mattress Requirements 요구사항 개요

[https://www.cpsc.gov/s3fs-public/15BCampbellCPSC.En\\_.pdf?3Mke6e54IAvMen7h841int2aautCzR.w](https://www.cpsc.gov/s3fs-public/15BCampbellCPSC.En_.pdf?3Mke6e54IAvMen7h841int2aautCzR.w)

- CPSC > F15.63 on Inflatable Air Mattresses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foia\\_airmatt4\\_17.pdf](https://www.cpsc.gov/s3fs-public/pdfs/foia_airmatt4_17.pdf)

- 16 CFR Part 1633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pen Flame) of Mattress Sets; Final Rule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media\\_mattsets.pdf](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media_mattsets.pdf)

- Requirements1 for Mattresses and Mattress Pads 16 C.F.R. Part 1632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media\\_regsummattress.pdf](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media_regsummattress.pdf)

- Subpart A.The Standard § 1632.1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FR-2015-title16-vol2/pdf/CFR-2015-title16-vol2-part1632.pdf>

- ISPA > Federal Mattress Regulations

<https://sleepproducts.org/advocacy/federal-mattress-regulations/>

## ▶ 라벨링 규제 개요

미국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라벨링 규제가 중첩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 표준기술연구소에서 미국 포장/라벨링 규정에 대한 FAQs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 중 일부 주요내용을 임의로 발췌하여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Labeling requirements related to legal metrology (i.e., products and commodities sold in package form by weight, measure or count) must comply with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FPLA) and Uniform Packaging and Labeling Regulation (UPLR), NIST Handbook 130-Current Edition). In addition, all products imported into the U.S. must conform to Title 19, United States Code, Chapter 4, Section 1304 and 19 CFR 134, Country of Origin Marking regulations. Other product categories, such as electronics, food, medical devices, etc., are covered by regulations from the responsible agency. A product may have to be complaint with several labeling regulations from different agencies.

\* 출처 NIST > Compliance FAQs: Packaging and Labeling in the US

<https://www.nist.gov/standardsgov/compliance-faqs-packaging-and-labeling-us>

## # 일반적 표시사항

- 제조업체 또는 자사 브랜드 명칭
- 제품 생산 장소 및 일자
- 제조 공정에 대한 상세 정보(배치 번호 또는 기타 제품 확인 특성 등)
- 그 외에, 제품의 구체적 자원(source)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

##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 표준기술연구소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공산품 표시규정과 같이 uniform packaging and labeling regulation에 따라 제품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www.nist.gov](http://www.nist.gov))에서는 표시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제품명,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법적 책임자) 정보, 라벨 부착 위치, 제품 상세정보 등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Uniform Packaging and Labeling Regulation (UPLR), NIST Handbook 130-Current Edition

: NIST Handbook 130 - 2025 > Uniform Packaging and Labeling Regulation (다운로드 필요)

<https://www.nist.gov/pml/weights-and-measures/publications/nist-handbooks/handbook-130>

▶ 가정용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라벨링 규제

미국의 대형 백화점 Nordstrom에서 공급자들에게 제공하는 규정정보 ‘가정용 섬유제품 라벨링 가이드’

Quick Reference Guide for Required Labeling of Home Textiles

Product	FPLA	FTC				Bedding Label Law Label	Flammability
	Labeled Measures	Fiber Content	COO	RN #	Care		
Chair pads Mattress pads Quilted items	X	X	X	X	X	X	X
Towels	X	X	X	X	X		
Throws	X	X	X	X	X		X
Table Cloths Placemats	X	X	X	X	X		
Rugs- small bathroom	X	X	X	X	X		X
Sheets duvet covers/shams Decorative pillow covers	X	X	X	X	X		X
Down & Down alternative Comforters & Pillows & Pillow inserts	X	X	X	X	X	X	X

\* 출처 Nordstrom Supplier Compliance > Home Textile Requirements

<http://nordstromsupplier.com/npg/PDFs/Product%20Integrity/Product%20Testing%20and%20Requirements/At%20Home/Home%20Textile%20Requirements.pdf>

▶ FTC 라벨링 규제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미국 FTC에 규제에 따른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이는 CPSC가 규제하는 라벨링과는 별도의 규제입니다. FTC는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자/수입업자의 정보제공을 초점에 두고 있다면 CPSC는 제품의 안내 및 경고 문구에 대한 라벨링을 중점으로 관리합니다. 해당될 경우 두 관할기관의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할기관별 섬유규제” 항목의 FTC관련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Bedding Law Label

-Intertek > U.S. - Law Labeling Requirements Updates for Filled Bedding and Furniture Products

<http://www.intertek.com/consumer/insight-bulletins/filled-bedding-furniture-products-updates-on-law-labeling-requirements/>

- BV > Uniform Law Labeling FAQ

<http://www.bureauveritas.com/home/about-us/our-business/cps/resources/q-a/qa-law-label>

- SGS > Update of Law Label for Bedding and Furniture Products

<https://www.sgs.com/en/news/2015/08/safeguards-14915-update-of-law-label-for-bedding-furniture-products>

베개커버, 쿠션, 매트리스, 섬유재질의 가구, 매트리스 패드, 섬유(textile) 등은 law label을 부착해야 합니다. 제품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 소재(filling materials)나 퍼센테이지 같은 제품구성(product content)과 함께 제조 정보(manufacture information)를 제공해야 하며 “UNDER PENALTY OF LAW THIS TAG NOT TO BE REMOVED EXCEPT BY CONSUMER”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라벨링 규제는 주마다 상이하므로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edding and Furniture Law Officials (IABFLO)에서 제조자를 돕기 위해 제정한 uniform law labeling을 준수하면 각 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 매트리스 라벨링 예시

- Presentation given to International Sleep Products Association (ISPA) on Mattress Standards, February 22, 2007, Chicago, IL (28~31쪽 30쪽 Labels for Domestic and Imported Mattresses Alone)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pdf\\_ispa1.pdf](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pdf_ispa1.pdf)

- Presentation given to International Sleep Products Association (ISPA) on Mattress Set Flammability, February 28, 2006, San Antonio, TX  
(30~32쪽 Labeling Requirements, 34쪽 Labels for Domestic Mattress with Foundation)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media\\_ispa.pdf](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media_ispa.pdf)

### \* 출처

- A Guide to United States Furniture Compliance Requirements (10쪽 확인)

<https://nvlpubs.nist.gov/nistpubs/ir/2016/NIST.IR.8119.pdf>

- A Guide to United States Apparel and Household Textiles Compliance Requirements (14, 21쪽)

<https://nvlpubs.nist.gov/nistpubs/ir/2016/NIST.IR.8115.pdf>

- CPSC > Mattress Flammability Information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Mattresses>

### \* 참고링크

- A Guide to United States Furniture Compliance Requirements

<https://nvlpubs.nist.gov/nistpubs/ir/2016/NIST.IR.8119.pdf>

- A Guide to United States Apparel and Household Textiles Compliance Requirements

<https://nvlpubs.nist.gov/nistpubs/ir/2016/NIST.IR.8115.pdf>

- Nordstrom supplier compliance > Home textile requirements

<http://nordstromsupplier.com/npg/PDFs/Product%20Integrity/Product%20Testing%20and%20Requirements/At%20Home/Home%20Textile%20Requirements.pdf>

### \* 국제/유럽 참고링크

- 국제수면용품협회 관련분야링크

International Sleep Products Association (ISPA) > Industry Links

<https://www.sleepproducts.org/resources/industry-links/>

- 영국 가구 섬유에 대한 가연성 규제

Jane Clayton & Company > Fire & Safety Regulations for upholstery fabrics

<http://www.janeclayton.co.uk/inspiration-advice/advice/fire-safety-regulations/>

- 영국 가구에 대한 가연성 규제

Fire Safety Advice Centre > Furniture and Furnishings (Fire Safety) Regulations 1988/1989, 1993 and 2010

<https://www.firesafe.org.uk/furniture-and-furnishings-fire-safety-regulations-19881989-and-1993/>

미국에 섬유제품에 필요한 별도 인증은 없지만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제한규제, 시험규격 및 라벨링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 모든 섬유제품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의 경우 섬유제품 규제 면제대상이거나 규제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섬유제품 규제 개요

우선 미국으로 섬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CBP 소관)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구성 및 케어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며 (FTC 소관), Flammable Fabrics Act에 의거하여 섬유제품은 재질별로 가연성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CPSC 소관).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관련규제는 EPA(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기농 섬유일 경우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USDA(농무부)의 유기농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이는 연방법 상에 공통규제 내용이며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는 미국 국가의 특성상 별도의 주별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주(州) 마다 법의 엄격한 정도가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가이드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CBP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What are the regulations for importing textiles?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205/~regulations-for-importing-textiles](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205/~regulations-for-importing-textiles)
- NIST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A Guide to United States Apparel and Household Textiles Compliance Requirements  
<https://www.nist.gov/publications/guide-united-states-apparel-and-household-textiles-compliance-requirements>
- Office of Textiles and Apparel (OTEXA) > U.S. Labeling Requirements for Textile, Apparel, Footwear and Travel Goods  
[https://otexa.trade.gov/us\\_labeling.htm](https://otexa.trade.gov/us_labeling.htm)
- ASTM > Textile Standards <https://www.astm.org/Standards/textile-standards.html>

### ▶ 관련 규정

미국의 섬유제품의 규제는 아래의 5개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州)마다 규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관	범주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관세국경보호청)	Country of origin for most imported products (원산지표시)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Flammability (가연성), Children's products (어린이용 제품),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환경청)	Pesticides (살충제),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독성물질)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Labeling (세탁방법, 섬유조성 등)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농무부)	Organic claims (유기농 섬유)

**참고**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각 관할별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관세국경보호청)** <http://www.cbp.gov>

**원산지 국가 표시:** 미국 관세법에 의해,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장소에 원산국의 영어명을 명확하게 표시한 라벨을 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

- Title 19, United States Code, Chapter 4, Section 1304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0-title19/html/USCODE-2010-title19-chap4-subtitleII-partI-sec1304.htm>

# **하위규정**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19 CFR 134, Country of Origin Marking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19 CFR 134, Country of Origin Marking

<https://www.gpo.gov/fdsys/pkg/CFR-2012-title19-vol1/pdf/CFR-2012-title19-vol1-part134.pdf>

- 19 CFR—CUSTOMS DUTIES U.S.C. § 3592. Rules of origin for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https://www.gpo.gov/fdsys/pkg/USCODE-2011-title19/pdf/USCODE-2011-title19-chap22-subchapterIII-partB-sec3592.pdf>

# **규제내용 : Country of origin for most imported products (원산지표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원산지가 최종 구매자에게 식별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원자재(예: yarn, thread, wool)와 가공지가 다른 경우 (예: 중국산 실크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블라우스),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판별을 위하여 반드시 미국의 원산지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연방규정집 Title19 - 3592에 명시되어 있으니 하위규정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규제는 CBP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만든 가이드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CBP > Terminology and Methods for Marking of Country of Origin on U.S. Imports

<https://www.cbp.gov/trade/rulings/informed-compliance-publications/markings-country-origin-us-imports>

- CBP > Requirements for country of origin marking on goods imported into the U.S.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492/related/1/session/L2F2LzEvdGltZS8xNTA0ODU2MzIwL3NpZC9TRDMxYWFzbg%3D%3D](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492/related/1/session/L2F2LzEvdGltZS8xNTA0ODU2MzIwL3NpZC9TRDMxYWFzbg%3D%3D)

- CBP >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s

<https://www.cbp.gov/trade/rulings/informed-compliance-publications>

- CBP > "Importing Into the U.S."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mporting%20into%20the%20U.S.pdf>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주로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감독하며, 제품의 문제가 있는 경우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CPSC 소비자제품 안전규제 개요**” 및 “**제품에 적용되는 CPSC 규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PA**

미국 환경보호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Chemical Substance), 혼합물(mixture), 제품(article)은 반드시 사전에 T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 연방 독성물질규제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환경규제법(Clean Air Act,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반출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및 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시험 기관에 자세한 문의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 **관련법**

**Toxic Substance Control Act (TSCA); 연방 독성물질규제법**

- Title 15 United States Code 2601-2692

<https://www.gpo.gov/fdsys/pkg/USCODE-2014-title15/pdf/USCODE-2014-title15-chap53.pdf>

# **규제내용**

이 법안에 의거하여 EPA는 화학물질, 혼합물,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보고(reporting), 기록보관, 시험요구사항, 제한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Toxic Substance Control Act’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섬유제품** 혹은 가구나 가구에 있는 **섬유의 경우 내연제 (耐燃劑, flame retardant)**로 사용하는 Hexabromocyclobododecane (HBCD)와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PBDE), 염색제로 사용하는 Benzidine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물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는 작업 90일 전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PBDE action plan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polybrominated-diphenyl-ethers-pbdes-action-plan>

- HBCD action plan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hexabromocyclododecane-hbcd-action-plan>

- Benzidine dyes action plan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benzidine-dyes-action-plan>

- Hexabromocyclododecane (HBCD)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risk-management-hexabromocyclododecane-hbcd>

- Risk Management for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s) under TSCA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risk-management-and-polyfluoroalkyl-substances-pfas>

※ **자료 출처** 미국 환경청 EPA [www.epa.gov](http://www.epa.gov)

해외인증정보시스템 > 미국 > EPA-TSCA(화학물질)

<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168>

##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미국 FTC에 규제에 따른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이는 CPSC가 규제하는 라벨링과는 별도의 규제입니다. FTC는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자/수입업자의 정보제공을 초점에 두고 있다면 CPSC는 제품의 안내 및 경고 문구에 대한 라벨링을 중점으로 관리합니다. 해당될 경우 두 관할기관의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 관련법

####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FPLA)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는 관련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거나 소비자의 선택, 제품 사용에 영향을 주어 부상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 참고 FTC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FPLA)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fair-packaging-labeling-act>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FPLA) 법안

Title 15, United States Code, > Chapter 39.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chapter-39>

- FPLA 하위 규정(regulations)

PART 500—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https://www.ecfr.gov/cgi-bin/retrieveECFR?gp=&SID=703f235c719a11282a755bbe5fccb4&mc=true&n=pt16.1.500&r=PART&ty=HTML>

- FPLA 하위 규정(regulations) 면제사항(exemptions)

PART 501—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https://www.ecfr.gov/cgi-bin/retrieveECFR?gp=&SID=3b209c798ff878358c4bc849ea7c5dd8&r=PART&n=16y1.0.1.5.63#se16.1.501\\_15](https://www.ecfr.gov/cgi-bin/retrieveECFR?gp=&SID=3b209c798ff878358c4bc849ea7c5dd8&r=PART&n=16y1.0.1.5.63#se16.1.501_15)

해당 규정의 Part 501: Exemptions 항목을 보면 종이 소재의 테이블커버(table covers), 침대시트(bed sheets), 베개커버(pillowcases)는 이 규정의 §500.12 요구사항으로부터 면제되어 길이와 폭을 인치로 명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에는 적용되어 제품유형, 제조자, 판매자 이름 및 주소 그리고 무게나 개수 등의 단위, 치수를 제공해야합니다. (수치는 미터, 인치/파운드 단위)

#### ✓ Textile and Wool Acts

- Textile Fiber Rule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textile-fiber-rule>

- Wool Products Labeling Rules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wool-products-labeling-rules>

- Rules and Regulations Under Fur Products Labeling Act (Fur Rules)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rules-regulations-under-fur-products>

✓ **FTC >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 미국에 수입되는 섬유 제품은 모두 연방 거래위원회(FTC: The Federal Trade Commission)의 관리하에 있어, 「섬유 제품 식별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에 의해, 일정한 정보를 각인, 태그, 라벨 그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정보란, 해당 제품의 일반 명칭(상표명 아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나 판매/취급업자의 명칭 및 연락처(또는 FTC로부터 받은 등록번호: 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RN)), 제품의 원산지 국가명, 섬유 함량(fiber content: 복수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신발의 경우에는 갑피가 복수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5% 이상의 구성물을 섬유 중량 비율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정렬하고, 5% 미만의 섬유의 합계를 「그 외 섬유」로서 중량 비율을 열거)입니다. 한 번 사용했던 충전재를 재사용한 경우 16 CFR 303,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에 따라 반드시 중고제품임을 명시해야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혹은 중고 충전재 제품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 FTC >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textile-products-identification-act-text#70>

- 16 CFR 303,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303.45 Coverage and exclusions from the Act 에서 제외 품목 확인 가능)

<https://www.gpo.gov/fdsys/pkg/CFR-2015-title16-vol1/pdf/CFR-2015-title16-vol1-part303.pdf>

✓ **의류나 특정제품에 대한 케어라벨링법**

- 취급 방법 표시 라벨: FTC는, 미국의 수입업자에 대해 섬유 제품으로 취급 방법을 나타내는 케어 라벨(care label)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어 라벨은 반드시 제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만 하며, 그 내용에는 세탁 방법(세탁, 건조, 다림질, 표백 및 경고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드라이클리닝 방법(일반적인 순서와 경고 사항에 대해 설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검사, 기술 자료)가 포함됩니다. 섬유 제품에 대한 케어 라벨 규정은 연방 규칙 「16 CFR Part 423.6 Textile wearing apparel」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케어 라벨은 통관 전에 부착할 필요는 없으나, 판매 전에 부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취급방법 기호는 ASTM D 5489-07(2013) Standard Guide for Care Symbols for Care Instructions on Textile Products 에 나와 있습니다.

- FTC > Care Labeling of Textile Wearing Apparel & Certain Piece Goods

<https://www.ftc.gov/node/119456>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care-labeling-textile-wearing-apparel>

- 16 CFR 423 - CARE LABELING OF TEXTILE WEARING APPAREL AND CERTAIN PIECE GOODS AS AMENDED

<https://www.govinfo.gov/app/details/CFR-2000-title16-vol1/CFR-2000-title16-vol1-part423>

## # 규제내용

### ✓ Textile and Wool Acts에 따른 라벨링 요구사항(labeling requirements)

FTC가 규제하고 있는 섬유, 울제품(textile and wool products)에 대한 연방 라벨링 요구사항(federal labeling requirements)은 대부분의 섬유, 울제품에 대해 섬유조성(fiber content), 원산지(country of origin), 제조자(manufacturer) 혹은 제품 취급, 마케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업체의 정보(identity)를 명시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류 및 섬유 제품은 이 라벨링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아래 참고링크에서 FTC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Textile Products: What’s Covered and What’s Not” 항목에서 Textile and Wool Acts에 따른 라벨링 요구사항 대상품목과 대상품목이 아닌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FTC는 Textile and Wool Acts에 따른 라벨링 요구사항(Labeling Requirements) 대상품목/비대상품목 리스트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의류와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섬유제품(textile products)이 라벨링 요구사항 준수대상입니다.**

**다만, 대상(Covered)/비대상(Covered) 제품목록에 다음과 명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트리스에 사용되는 시트/커버나 각종 침구 등은 대상이나 매트리스 자체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 - 대상(Covered)

Bedding, including sheets, covers, blankets, comforters, pillows, pillowcases, quilts, bedspreads and pads (but not outer coverings for mattresses or box springs)

#### - 비대상(Covered)

1) Upholstery or mattress stuffing that is not reused. If the stuffing is reused, the label must say so.

2) Outer coverings of upholstered furniture, mattresses and box springs)’는 textile products labeling requirements

### \* 참고

Threading Your Way Through the Labeling Requirements Under the Textile and Wool Acts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guidance/threading-your-way-through-labeling-requirements-under-textile>

### ✓ 표시 사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규정에 따라 귀사의 제품이 해당될 경우 섬유제품(필요한 경우 포장에도)에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이름 및 섬유 조성 (백분율)
- 원산지
- 세탁방법(care labeling)
- 제조자 또는 담당 회사 또는 등록번호 (RN, 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

### ✓ 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 (RN, 제조자 등록 식별번호)

FTC는 제조자/업체에 대한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FTC가 발행하는 제조자 등록식

별번호(RN)를 받아 표시해야 합니다.

- FTC > 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 Database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selected-industries/registered-identification-number-database>

- FTC > Apply for a new RN or update an existing RN

<https://rn.ftc.gov/Account/ApplyForNewRN>

- FTC > 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selected-industries/registered-identification-number-frequently-asked>

※ 출처

- A Guide to United States Furniture Compliance Requirements

<https://nvlpubs.nist.gov/nistpubs/ir/2016/NIST.IR.8119.pdf>

- A Guide to United States Apparel and Household Textiles Compliance Requirements

<https://nvlpubs.nist.gov/nistpubs/ir/2016/NIST.IR.8115.pdf>



▶ 유의사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 주별 규제 및 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보다는 리콜/처벌 등의 엄격한 사후 관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세관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사후에 문제 발생 시 매우 엄격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별규제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로 이루어진 국가로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주별로 각종 민간기관의 실험·연구 등으로 기준화 및 규격화된 규격을 채택하여 강제하거나 주별 규제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강제인증과 같이 통용될 수 있으며 해당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내 강제처럼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마다 규제여부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별 규제 및 임의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가차원의 규제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주별 규제는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의 업무 대응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는 환경규제인 The Proposition 65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정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예) OEHHA > Proposition 65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OEHHA > The Proposition 65 List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TUV SUD > California 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www.tuv-sud.kr/kr-kr/activity/testing-product-certification/california-proposition-65>

▶ 임의인증

강제 인증이 없어도 민간단체에 의한 임의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 규제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용도의 여타 강제 인증과는 달리 민간 임의인증은 임의, 자율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제품을 증명하는 품질인증이므로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시험하신 후 DoC를 발행하시거나 해당 규격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을 경우 시험 후 해당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DoC는 말 그대로 업체 본인이 선언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온라인상에 게재된 DoC form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본 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연구·자료수집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설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 <http://www.kotra.or.kr/KBC/northamerica/KTMIUI010M.html>

뉴욕무역관(미국) / 달라스무역관(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 마이애미무역관(미국) / 시카고무역관(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 워싱턴무역관(미국)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Trade Pro 무역애로상담 1566-5114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 규격

규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거나 한국표준정보망 (KSSN)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관련 규격 파악

- 규격 구입: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http://www.kssn.net))

▶ 시험기관

# 한국인증기구(KOLAS)인정 국내 시험소

한국인증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는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정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분야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며,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즉, 특정 규격/시험에 대해 KOLAS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KOLAS 시험기관입니다.)

- 한국인증기구 KOLAS > 시험기관검색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 비 KOLAS 기관

위의 KOLAS 기관이 아니어도 시험이 가능한 기관은 많으며, 미국 수출이 목적이라면 미국계 시험기관이나 미국 내 시험기관 또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품목별로 시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http://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567-7474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652 / <http://www.sgsgroup.kr/>
- TUV-SUD / 02-3215-1100 / [www.tuv-sud.kr](http://www.tuv-sud.kr)
- TU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 기타

##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 지원 사업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55513>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25년 공고 미정)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 사업명 :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일반트랙 3차) 1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545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이미 공고된('24. 2. 29.) 패스트트랙인증\* 지원은 당시 공고기준을 따름

구분	내용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패스트트랙 인증(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일반트랙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유럽 CE(의료기기 등 패스트트랙 이외에), 중국 NMPA, 미국 FDA 등

\*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일반트랙 지원 대상 인증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모집 기간

구분	기간
패스트트랙	24년 2월 29일(목) 09:00 ~ 8월 30일(금) 18:00까지(상시 모집) *패스트트랙은 상시 접수(3월-8월)를 통해 월별 간이 심사로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
일반트랙	'24년 8월 1일(목) 09:00 ~ 8월 30일(금) 18:00 까지 *일반트랙은 총 3차(2월, 5월, 8월)로 나눠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지원사업 공고 > 수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list.do>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남] 2025년도 글로벌 강소기업(강소·강소+)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3662](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3662)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충북] 충주시 2025년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충주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3633](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3633)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기업마당 비즈인포 > 2025년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3630](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3630)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